

062단2459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137-741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전화 02-530-3114

/전송 02-530-4555

2006 형제 24637 호

2006. 5. 30.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제목 공 소 장

검 사

인

신 성 식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김 명 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본 적	
죄 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 소 사 실	별지 공소사실과 같음	
적 용 법 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신 병	불구속	
변 호 인		
불 입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로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 부교수지위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자 이에 관여했던 판사들에게 불만을 품고,

1. 가. 2005. 8. 2. 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08:05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판사 등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관님 성대 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 할 책임을 통감하세요”,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이상훈 친형의 직무유기 덮는 것도 사법정책입니까?”, “쓰레기 판사는 쓰레기 통으로 김치도 수입한다 판사도 수입해라”. “이광범 인사실장 이상훈 친형 직무유기 감싸기요? 판사형제는 용감했다?” 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대형피켓을 자신의 몸과 가로등에 내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8. 2. 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혁우 판사가 법관의 직무수행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눈뜬 장님인가? 성대입시부정 눈감은 건가” 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대형피켓을 자신의 몸에 내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사실은 피해자 송영천, 양승태, 이상훈, 이광범 판사 등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http://geocities.com/henrythegreat/diary/htm>)에 접속하여,

가. 2005. 12. 20. 경 위 사이트에 “서울고등법원 이상훈 판사는, 법원인사실장인 동생, 이광범 판사를 믿는지(11월25일 제출된 기일지정 신청서에 대해)도무지 반응이 없다. (입이 10개 있어도 할말이 없겠지만) 묵묵담담인 피고 성대측의 편리를 보아주는지...골치 아픈 사건을 슬그머니 넘기려는지(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발령받아 떠날 때까지 시간 끌며 버티면 되다는 수작인지)...흠~ 이상훈, 이광범 형제는, 현 대법원장 이용훈의 광주일고 서울법대 후배로서, 동생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며 대법원장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텐데... 그 선배에 그 후배들?” 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나. 2006. 1. 12. 일시불상경 위 사이트에 “진퇴양난의 이상훈 재판부의 뻔뻔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라, 동생뻘도 있는데, 2월 정기인사때 다른 자리로 튀면 되지, 김X호 이놈이 뭐라고 하든 나 몰라라 귀막고 복지부동하는거야” 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다. 2006. 1. 18. 일시불상경 위 사이트에 “송영천 판사의 개판 재임용 판결문의 핵심부분.(중략) 정말~ 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갈겨 쓰고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광주일고 동문과 동생 송영길(열린우리당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뻘이 좋긴 좋은 모양.” 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라. 2006. 2. 10. 일시불상경 위 사이트에 “쓰레기판사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나?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판사는(대법관 양승태) 괜 찮고, 이까짓 피켓구호가 무슨 큰 대수인가. 참고로 불만있는 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리고, 왜? 재판 판결문 등으로 일은 다 저질 러 놓고 나서, 뒤치다꺼리는 아래 사람들 보고 하라고 들볶냐? 이 치사 하고 비겁한 인간들아.” 라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